

2012. 12. 6.(목)

제18대 대선 공약 반영 건의과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건의과제 목록

I .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한 적정소득 보장과 경영안정화

① 소득감소 보전 및 소득격차 해소

- (1)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및 식량자급률 상향
- (2) FTA 피해대책 마련 및 무역이득공유제 실시
- (3) 소득보전직불제 확대 및 지원 현실화
- (4) 축산 분야 시장개방 피해대책 강구
- (5) 대기업의 문어발식 농어업·유통 분야 진출 규제

② 농어업 경쟁력 강화

- (6) 농어업용 면세유류 지원 확대 및 가격 인하
- (7)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공동작업단 육성
- (8)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9) 농어업 인력 지원센터 설치
- (10)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대출조건 완화
- (11) 친환경 농어업 지원 확대 및 시설현대화·기술보급 추진

③ 유통 시스템 혁신

- (12) 할당관세 적용 사전 심의제 시행
- (13) 농협 개혁을 통한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④ 재해 피해 지원 확대

- (14)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및 복구비 현실화
- (15) 농어업인 재해안전보험 개선

II. 농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출산·보육·교육·복지 지원

- (16) 출산·보육·교육 지원 강화
- (17) 고령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III.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규제 완화

- (18) 정주여건 개선 투자 및 포괄보조금 지원 확대
- (19) 지역개발 가로 막는 각종 규제 완화·폐지

IV. 농어업 중시 국정 운영 및 범국민 농정 거버넌스 구축

- (20) 대통령실 소속 농림해양수석 비서관 부활
- (21)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식품 발전위원회 설치
- (22) 지방 농촌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국가직 환원 반대

제18대 대선 공약 반영 건의과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어촌지역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함께 노력하여 극복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전국 단위 협의체입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참여 59명의 군수들은 대통령선거가 우리사회 의 시대적 핵심과제들에 대하여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찾 아가는 역동적 정치공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부와 지방과 농어업인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협치농정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2개 대선공약 반영과제를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건의합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고 경영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1970년에 1,442만2천명이던 농가인구는 2011년에는 296만2천명으로 80%나 줄어들었습니다.

도시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정책과 영세농 퇴출을 수반하는 농어업 구조개선 및 물가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농산물 가격조절 정책으로 인해 농어업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며 먹고 살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농어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농가 실질소득은 아직도 감소하고 있으며 도·농간 소득격차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1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59.1%에 불과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농어업·농어촌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입니다.

농어촌의 완전한 해체가 정부가 의도하는 최종목표가 아니라면 이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의 적정소득을 보장해 주고 경영을 안정화 시키는 방향으로 농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농어업인의 적정소득 보장과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농어업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적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 제도적·정책적 문제들과 불합리한 소득격차 발생 요인들을 없애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① 소득감소 보전 및 소득격차 해소

정부가 규모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업 구조개선사업을 수십년간 지속한 결과,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격차와 소수 대농과 다수 영세농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농어촌은 도시로 떠날 수 없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강대국과의 동시 다발적인 FTA로 인하여 남아있는 대다수 영세 농어업인들은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추구한다면 방관하는 자세로 농업정책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소득보전과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의과제 1)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및 식량자급률 상향

-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 곡물·채소·과일·축산물 등의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기초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 식량안보 차원에서 26% 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식량자급률을 50%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건의과제 2) FTA 피해대책 마련 및 무역이득공유제 실시

- 대책 마련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업 강대국과의 FTA 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피해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先 대책 마련, 後 협상 원칙)
- 대책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피해 당사자인 농어업인 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한·중 FTA는 농어업 분야를 협상에서 제외하거나 농어업 민감성을 고려하여 보호방안을 최대한 확보한 것이 확인된 후 국민적 동의 하에 추진해야 합니다.
- FTA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는 큰 이득을 보게 되지만 이는 농어업 분야의 희생을 바탕으로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FTA로 수혜를 입는 제조업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부 이익을 환수하여 피해를 입는 농어업 분야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어업인들이 무역이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구체적 방법은 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부흥세 신설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방안입니다.

(건의과제 3) 소득보전직불제 확대 및 지원 현실화

-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피해보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 예산을 국가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 농어업예산 대비 직불금 예산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가의 농업소득 중 직불금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소득 안정장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가격을 낮추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이나, 직불금을 더한 합산소득이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원기준을 시급히 현실화해야 합니다.
고정직불금을 �екта 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쌀 목표가격은 쌀 생산비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을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고 직불금은 논농업직불금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 소득안정형직불제(쌀직불제 · 밭직불제) 이외의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각종 직불제를 통합하여 농가 단위 기초소득 보장제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건의과제 4) 축산분야 시장개방 피해대책 강구

- 한 · EU FTA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야는 축산업으로 향후 15년간 발생할 농업부분 생산 감소액 중 93%가 축산업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시장개방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대책과 선진화를 위하여 5조원 정도의 축산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 가임 암소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하여 종합적인 축산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임 암소수를 조절하려는 현재 방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중단에 따른 축산농가 분뇨처리비 부담 완화대책을 수립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건의과제 5) 대기업의 문어발식 농어업 분야 진출 규제

- 대기업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진출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분야를 수직계열화 해서 동네 상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농축수산업 분야 대기업 진출 허용은 농축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모든 단계가 대기업 자본에 의해 지배되도록 만드는 정책이므로 법으로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 특히 대기업이 대규모 목장과 양식어장 및 시설하우스 등을 통해 농수축산물 생산량을 마음대로 조절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영세 농어업인은 완전히 퇴출되거나 대기업 위탁사업자 또는 사실상 고용 노동자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②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인의 적정소득 보장과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농어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비가 인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어업인이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기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너무 높고, 생산비를 절감하더라도 지금의 농수산물 가격정책 하에서는 농어업인에게 이윤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농기자재 구입비·인건비·금융비 부담을 경감시켜 전체 생산비를 낮춰 줘야 합니다.

(건의과제 6) 농어업용 면세유류 지원 확대 및 가격 인하

- 시설재배가 증가하고 대형 농기계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면세유류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대상과 지원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 유류비가 아직도 농어업 생산비에 큰 부담이 되므로 추가적 가격 인하 조치가 필요합니다.

(건의과제 7)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공동작업단 육성

- 농기계 임대사업자를 확대하고 영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작업단으로 육성하여 값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고령·영세농의 영농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건의과제 8)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사료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축산물 생산비가 폭등하고 있으므로, 축산발전기금 내 사료가격 안정

계정을 설치하거나 배합사료 가격안정기금을 별도 조성하여 사료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배합사료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사료원료에 무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건의과제 9) 농어업 인력 지원센터 설치

-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업 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일용 도시근로자·노숙자·실업자 등을 재교육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체계적인 인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쿼터량을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연장해야 합니다.

(건의과제 10)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대출조건 완화

- 금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하고 20년 장기 상환으로 대출조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 농가부채 해소를 위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저리자금으로 전환시켜 줘야 합니다.

농어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 농어업을 친환경 고부가가치 안심 식품산업으로 융합·발전시켜야 합니다.

(건의과제 11) 친환경 농어업 지원 확대 및 시설현대화·기술보급 추진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과 지급한도면적 확대도 병행해야 합니다.

- 친환경 축산 정착을 위하여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시설 설치 및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친환경수산직불제를 도입하여 친환경 양식 확산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와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자 기준을 2006년 이전 축산업 등록농가에서 전체 등록농가로 확대해야 합니다.
- 농어업을 식품산업과 융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어업에 첨단산업기술을 접목시키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③ 유통 시스템 혁신

농어업인의 적정소득 보장과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파동, 유통기업과 중간 상인만 배불리는 원시적 유통구조,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물가조절 위주의 농업정책 때문입니다.

이제는 생산자인 농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건의과제 12) 할당관세 적용 사전 심의제 시행

- 수확량 감소와 생산비 증가가 원인이 되어 상승한 농산물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은 농어업인의 일방적인 피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 할당관세 적용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식품 발전위원회와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건의과제 13) 농협 개혁을 통한 농산물 유통 시스템 개선

- 대형유통기업·도매시장·중간상인들에 의하여 농업인들이 지배를 받는 지금까지의 전근대적 유통구조를 농협이 산지 유통조직의 중심이 되어서 혁파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 농협이 계약재배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을 조절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유통까지 책임지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안정된 판로와 소득을 보장해주는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산지 유통조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정착시켜야 하며, 지역농협의 통합과 전문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생협 방식의 농산물 유통을 확대시키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④ 재해 피해 지원 확대

농어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산하거나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삶 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농어업인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큰 피해를 입었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일은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건의과제 14)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및 복구비 현실화

- 농수산물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고 국고부담률을 높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여야 되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손해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건의과제 15) 농어업인 재해안전보험 개선

- 농어업인이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큰 비용부담 없이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재해안전보험의 국고지원율을 높이고 실손 보상형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산·보육·교육·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득 정책만으로는 농어업인 삶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의 특징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고령화·취약계층 증가·다문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 수요가 급증하여 농어촌지역 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어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고령화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도 모두 인구 감소에서 시작된 것이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국가에서 추진했던 도시 중심의 불균형 성장정책과 농어업 구조개선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각종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의과제 16) 출산·보육·교육 분야 지원 강화

- 영유아양육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농어촌지역이 경제논리에 밀려 교육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군 단위 거점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고, 1 읍면 1 초등학교를 유지해야 합니다.
- 농어촌지역 모든 학생들에 대한 무상 급식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 농어촌지역 부모들이 도시로 이주하지 않고도 자녀를 대학교까지 교육시킬 수 있도록 대학교 농어촌 특례입학 비율을 현행 4%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과 학교시설 확충 및 학교 교원배정 등에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낙후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건의과제 17) 고령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 현재의 방문형 돌봄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안부살피기 수준에 불과하므로, 사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고령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하면서 국가의 직접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단위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농어촌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인프라를 확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농어촌지역은 인적·물적 자원이 도시로 유출되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은 친환경 농업과 농어업의 다차 산업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방해하고 선진 한국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사회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의과제 18) 정주여건 개선 투자 및 포괄보조금 지원 확대

-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을 낙후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낙후지역과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도서지역의 여객선 운임과 생필품 물류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포괄지원 예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건의과제 19) 지역발전 가로 막는 각종 규제 완화·폐지

- 지역개발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자체 결정·협의권한 면적과 농업진흥 지역 및 보전임지에 대한 지자체 해제·전용 승인권한 면적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인들이 개인 소유의 농촌체험·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 해상국립공원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몇 년씩 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점검·확인하는 시스템과 범국민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치농정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의 농정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불균형 성장정책과 소수 대규모 전업농에 혜택이 집중되는 규모화 위주의 농어업 구조개선 정책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성장과 안정을 병행하고, 계층간·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업정책의 목표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국민 후생과 연계된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진방식도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지방에 지시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치·자율 농정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범국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농어업인이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협치농정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건의과제 20) 대통령실 소속 농림해양수석 비서관 부활

- 농어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농림해양수석 비서관 제도를 부활해야 합니다.

(건의과제 21)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식품 발전위원회 설치

- 정부와 지방과 국민이 함께하는 협치농정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민과의 소통 창구 및 범부처적 조정기능을 담당할 농어업·농어촌·식품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기존 총리실 소속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범부처적 통합조정 능력과 동력 확보가 미흡하므로 가칭 「농어업·농어촌·식품 발전위원회」는 반드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해야 합니다.
- 현재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은 농식품 정책의 범위가 산업적 차원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안심 먹거리와 국민 건강 및 식량안보 등을 포괄하도록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기본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실질적인 농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회의소 법제화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건의과제 22) 지방 농촌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국가직 환원 반대

-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 중심의 분권형 농어업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지방 자치와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지방 농촌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국가직 환원은 절대 불가합니다.